

III 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4. 신변보호원 교육훈련제도의 보완 : ① 신임교육

1) 신임교육

- 신변보호업무에 준한 신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령 정비
- 현행,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

구분(교육시간)	과 목	시 간
예문교육 (5시간)	「경비업법」	3
	범죄예방론(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)	2
	시설경비실무(신고 및 순찰요령, 관찰·기록기법을 포함한다)	2
	호송경비실무	2
	신변보호실무	2
실무교육 (20시간)	기계경비실무	2
	사고예방대책(태러 대응요령,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을 포함한다)	3
	체포·호산술(질문·검색요령을 포함한다)	3
	장비사용법	2
	직업윤리 및 서비스(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)	4
기타(3시간)	업교사, 평가 및 수료식	3
계		29

한국정부학회

III 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4. 신변보호원 교육훈련제도의 보완 : ② 직무교육

2) 직무교육

- 신변보호업무에 준한 직무교육
- 신임교육의 개편이 불가하다면, 직무교육에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함.

[경비업법령 상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들]

-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일반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.
-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·실무과목,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.

한국정부학회

III 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4. 신변보호원 교육훈련제도의 보완 : ③ 무도교육

3) 경호무도(무술)교육의 실시

- 범죄의 양상은 날로 흉포화
- 경비업 허가사항(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)은 '무술유단자' 명시
- 무도(무술)수련은 지속성이 있어야 함
- 현행 직무교육 여건 상 무도교육은 불가한 실정
- 따라서 경호무도교육은 보수교육(집체) 형식으로 마련할 필요성 제기
 - 무도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

시설 등 기준 업무별	경비인력	자본금	시 설	장비 등
신변 보호업 무	무술유단자 5명 이상	5천만원 이상	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	○통신장비 ○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

III 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5. 행정적 보완 : ① 신임교육 면제 대상 확대

- 전국 경호학과는 47개교(2013년 현재, '경호'명칭이 포함된 학과)
- 경호학과 출신자에 대한 신임교육 면제 검토
 -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음에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

- 1 시설경비업무 중 행사장, 노사분규 사업장 등의 장소에 배치된 일반경비원
- 2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

[경비업법령 상 신임교육 제외 규정]

-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,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경호공무원, 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(경비업법 시행령§18①).

III 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5. 행정적 보완 : ② 배치신고 예외 규정 신설

- 신변보호업의 특수성(신변보호 요청을 긴급으로 할 경우)을 고려하여
선배치 후배치신고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검토

[경비업법령 상 배치신고 기한에 관한 규정]

-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(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)까지 신고

1. 시설경비업무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
2.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
3. 특수경비원(경비업법§18②).

신고처	신고의 기한	비고
배치지의 관할 경찰관서장	배치한 후 7일 이내	일반경비원 :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
	배치전	특수경비원
	배치24시간전	신변보호업무, 시설경비업무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

한국정부학회

IV 요약 및 결론

신변보호업의 현안과 발전과제

1.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과제
사업성 문제 ; 사업적 한계성 ; 시장의 제한
고객가치의 명확화, 수익 메커니즘 개발, 선순환 구조로 전환, 특성화 개발
2. 인식향상의 과제로서 법령 등 사용용어 표준화
3. 전문성향상의 과제로서 자격제도 보완 및 정착
 - 1) 경비지도사 자격제도 보완
 - 2)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정착
4. 신변보호원 교육훈련제도의 보완
 - 1) 신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령 정비
 - 2) 직무교육의 내실
 - 3) 경호무도(무술)교육의 실시 / 보수교육 제안
5. 행정적 보완
 - 1) 신임교육 면제 대상 확대
 - 2) 배치신고 예외 규정 신설

-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민간경호산업(신변보호업)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? 하는 데서 출발하여, 현안과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탐색·논의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토대로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.

한국정부학회

